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명절 30만원까지 가능...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기대



● ● ● 식사가액 3만원 상한기준 7년째 적용 '비현실적' 농축산업계, 선물가액에서 농축산품목 제외 요구

농축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이 가시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고 명절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선물 가액 상한액이 상향됐다. 그동안 농축산업계는 생산비 급등, 농축산물 가격하락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영 불안 해소와 농축산물 소비 증진 효과 제고 등을 위해 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의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이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8월 21일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같은 날 권익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물 선

물가액 상한을 심의하는 데 따른 권익위의 결정을 촉구한 것이다.

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收受)를 금지한다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성 없는 농수축산 선물가액제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간 농축산업계는 농축산물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과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명절 소비 의존도가 큰 농축산물 특성을 고려해 그동안 명절 선물가액은 일부 상향조정 됐으나 생산비 폭등으로 시름하는 농축산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현실을 반영해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추가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도 지난 8월 14일 성명서를 내고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을 감안해 식사가액을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할 것과 선물가액에서 농축산품목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축단협은 사료값 등 생산비가 대폭 상승한 상황에서 금리인상과 소비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축산농가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외식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도 각종 비용상승 속에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청탁금지법 가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은 3만원으로 상한 기준이 설정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어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최근 전국 외식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음식값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사비 3만원 한도 가액에 대해 63.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상향조정을 원하는 응답자는 기존 3만원의 두 배가 넘는 평균 7만5,000원으로 상한가액을 올려주길 바라며 가액 상향으로 인해 시장에 활력을 부는 소비 분위기 전환과 현재의 어려움이 타파되길 희망했다.

축단협은 부정청탁금지법 기본 취지는 국민 모두 공감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법 시행과정에서 가액 한정으로 인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현장 상황을 이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축단협은 농축수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랑스러운 먹거리일 뿐임을 강조하며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소비 심리적 부담감 완화,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식사가액 10만원 한도 상향과 선물가액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의 대승적인 큰 결정을 요구했다.